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77,328,636	44,319,859
일반회계	1,332,459,561	39,973,787
특별회계	144,869,075	4,346,072
공기업특별회계	127,619,908	3,828,59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6,516,586	1,995,498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1,103,322	1,833,100
기타특별회계	17,249,167	517,475
주택사업특별회계	2,965,408	88,962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586,860	77,606
농공단지특별회계	602,000	18,060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0,909	3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41,900	43,25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21,492	189,645
수질개선특별회계	1,057,070	31,712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841,123	25,23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805	144
도시개발특별회계	361,600	10,848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056,000	31,6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23,01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2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